

[별표 2] <개정 2026. 5. 28.>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단계	경계	1단계	2단계
태풍비상	태풍의 중심이 12시간 이내에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 중 비상구역으로 이동이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해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태풍의 중심이 별표 3의2의 태풍의 비상·경계·감시구역 중 비상구역 또는 경계구역 내에 위치하고 12시간 이내에 육상예보구역에 태풍특보가 예상될 때
호우비상	관할구역에 호우특보가 예상되거나, 호우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호우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호우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대설비상	관할구역에 대설특보가 예상되거나, 대설주의보가 발표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대설경보가 예상될 때	관할구역에 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재해가 예상될 때
위험기상 비상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	황사, 강풍 등 위험기상 현상으로 광역적이고 심각한 재난이 임박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 해상예보구역이란 「예보업무규정」 별표 4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 육상예보구역이란 「예보업무규정」 별표 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비고

1. 기상청 본부 호우·대설 비상근무는 다음 기준에 따르되, 방재기상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계	경계	1단계	2단계
기준	육상특보구역 중 30개 이상의 구역에 특보가 예상될 때	육상특보구역 중 30개 이상의 구역에 특보가 발표될 때	육상특보구역 중 30개 이상의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고, 육상예보구역 중 3개 이상의 구역에 경보가 발표될 때

※ 육상특보구역이란 「예보업무규정」 별표 9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동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시·군 내에서 1개 이상의 육상특보구역 중 특보가 예상·발표된 경우에는 1개의 구역에서 특보가 예상·발표된 것으로 본다.
3. 도서지역(「예보업무규정」 별표 9에 따른 서해 5도, 완도여서도, 영광낙월면,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보령도서, 울릉도·독도, 추자도, 군산옥도면(어청도제외), 군산어청도, 부안위도면을 말한다), 산지(「예보업무규정」 별표 9에 따른 구례산간, 태백, 강릉산지, 동해산지, 속초산지, 삼척산지, 정선산지, 고성산지, 양양산지, 양구산지, 인제산지, 평창산지, 홍천산지, 봉화산지, 울진산지, 영양산지, 제주시중산간, 서귀포시중산간, 제주도산지를 말한다)에 발표되는 특보는 비상단계의 기준이 되는 특보에서 제외한다.